

##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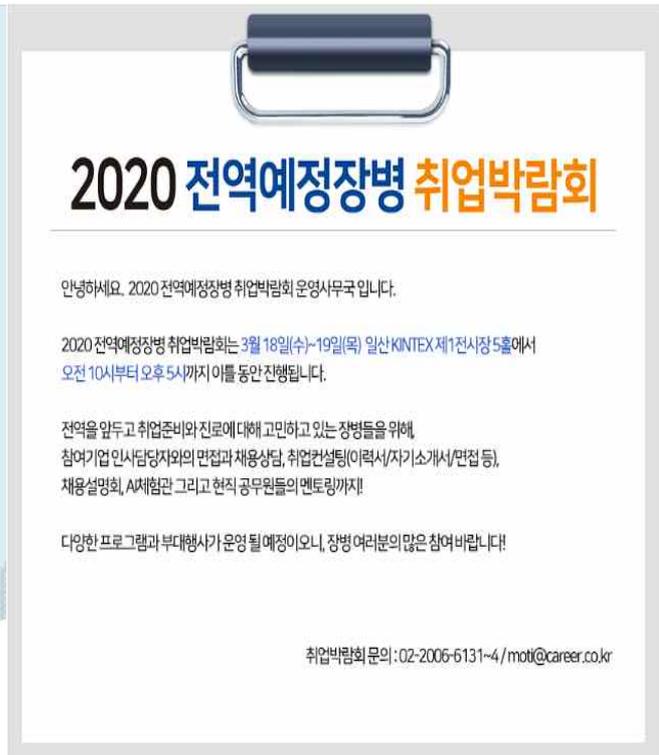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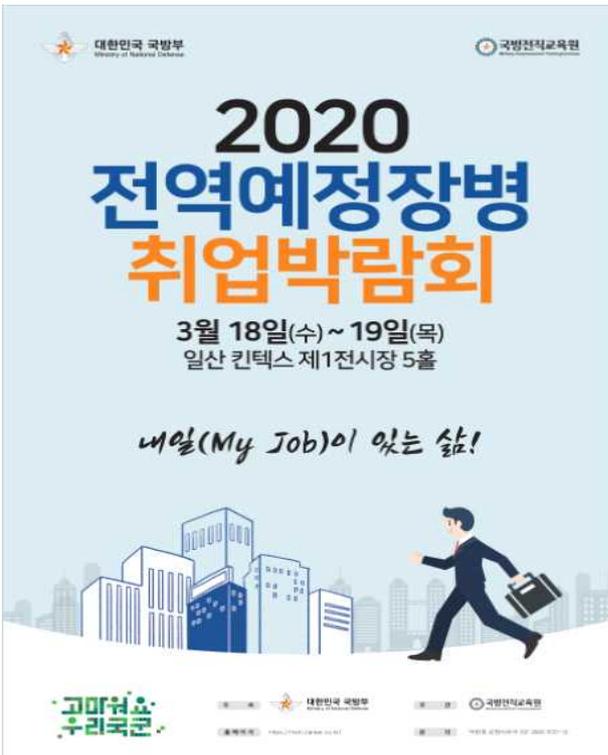
### □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일시	2020년 2월 27일(목) ~29일(토) (3일간)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D, E		
참가대상	박람회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구성	전국일자리 워크숍,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기타 부대행사		
주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주관	2020 일자리 엑스포 조직위원회· 에코마이스(주)		
기업신청기간	박람회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사전접수및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6000-4278	FAX	02-6455-0953
담당자		E-MAIL	jobexpo@ecomice.com
사이트(출처)	<a href="http://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com/index.php">http://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com/index.php</a>		

\*자료출처 : <http://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com/index.php>

□ 2020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일시	2020년 3월 18일(수)~19일(목) 10:00 ~ 17:00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참가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군 전역예정장병		
행사구성	채용면접 및 상담, 1:1 맞춤 취업컨설팅, AI 현장매칭,		
주최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국방전직교육원		
기업신청기간	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접수 및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2006-6131	FAX	—
담당자		E-MAIL	moti@career.co.kr
사이트(출처)	http://moti.career.co.kr/default.asp		

\*자료출처 : <http://moti.career.co.kr/default.asp>



## 대기업,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책임진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 예고(2.1~3.12) —

-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의무 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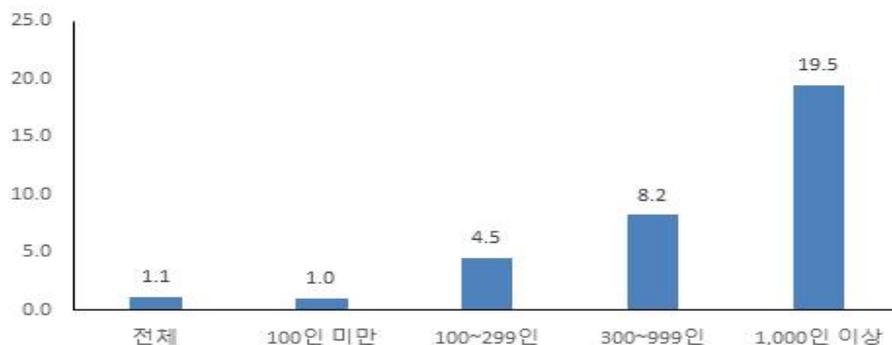
- 1년 이상 재직한
- 50세 이상 근로자로
- 정년,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 서비스 내용 등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 ※ 경영상 이유로 퇴직: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 생애설계 등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 '19년 기준)



\* 출처 :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사무관(☎044-202-74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추진 배경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20.5.1.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2019.4.30. 개정, 2020.5.1.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기업 범위 등 법률이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 예고 실시

□ 주요 내용

- 의무이행 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 >**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100미만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사업장수	2,308,327	2,288,681	14,744	2,425	1,532	945
비율	100.0	99.1	0.6	0.1	0.1	0.04
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	1.1	1.0	4.5	8.2		19.5

\* 사업장수는 '18년말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19.6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 연령 : 50세 이상, 단 1년 미만 근속자 제외

- 기간제 근로자 :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계약 갱신 등으로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

\* 공사의 종료 등 이직자도 제외. 다만,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이직사유 : 자발적 이직자,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이직자는 제외

< 2018년 1,000인 이상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자(50세 이상)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이상)	1~3년 미만	3년 이상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09,376	58,632	50,744	15,101	15,221	20,422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	32,802	21,436	11,366	4,449	4,086	2,831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	1,270	416	854	178	206	470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1,389	651	738	276	241	221
<b>계약만료, 공사종료</b>	34,176	25,743	8,433	4,865	2,720	848
<b>비자발적 사유</b>	<b>39,112</b>	<b>10,156</b>	<b>28,956</b>	<b>5,257</b>	<b>7,820</b>	<b>15,879</b>
폐업, 도산	388	82	306	69	136	101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포함)	26,165	8,633	17,532	4,229	4,682	8,621
정년	12,559	1,441	11,118	959	3,002	7,157
기타	627	230	397	76	148	173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 진로·생애경력설계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취업알선

- 교육훈련 :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서비스 유형별 예시 >

유형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일수 등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 개인별 「진로 설계서」 작성
취업 알선	· 상담을 통해 적합한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교육 훈련	·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시기

- 이직일(또는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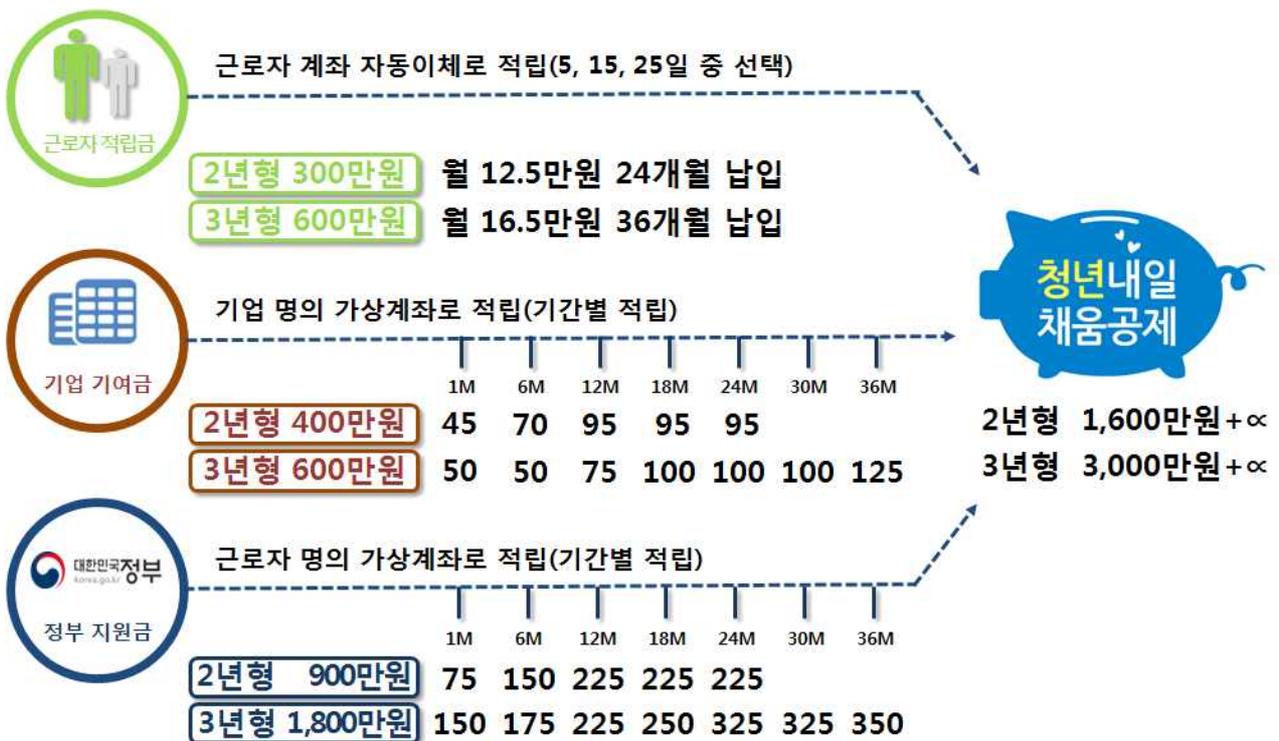
\*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li> <li>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li> <li>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li> <li>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li> <li>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li> </ul>
2	고용안정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li> <li>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li> <li>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li> <li>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li> </ul>
3	고용유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용유지지원금,</li> <li>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li> </ul>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li> <li>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li> </ul>

## 2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 3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 창 장려 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 안 장려 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 유 지 원 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 년 · 고 령 자 고 용 지 원 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